

대법원

제 2 부

결정

사건 2006모55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
재항고인 김명호

주거 :

피의자 1. 박홍우

2. 이상훈

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자 2006초기302 결정

주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이유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

정한다.

2006. 11. 13.

재판장 대법관 김용답

대법관 박시환

주심 대법관 박일환

대법관 김능환